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,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(안 제11조제3항).
-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0조 신설).

II. 검토의견: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추가 여부 논의 필요 (안 제20조)

안 제20조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,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.

한편, 개정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행정기관위원회법”)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, 해당 법률

의 시행일인 2023년 11월 17일 이후에 설치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.¹⁾

그럼에도 안 제20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음. 이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손실보상을 위한 필수절차인 점을 고려하여, 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로 손실보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.

다만, 안 제20조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두어야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해당함.²⁾ 또한,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예외없이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,³⁾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

1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「정부조직법」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칙 제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제3호,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2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

2.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

3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

「정부조직법」 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·처·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,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.

제16조(대통령경호처)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.

3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 ① 「정부조직법」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(이하 “행정위원회”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
2.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3.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(獨自性)이 있을 것

4. 업무가 계속성·상시성(常時性)이 있을 것

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원회 또한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.

따라서, 안 제20조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1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